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지침 안내 및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관리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2)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적용 기간 : 2020년 11.24(0시) ~ 2020년 12.7(24시)까지
 -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 지자체별로 대상 지역 조정 가능

< 주요 지침 >

①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 유흥시설 5종*
 -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 붙임 1.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 대상 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50m² 이상)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의무화된 방역 조치를 1차례 위반하더라도 집합금지 실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가능함
- 붙임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②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 일반관리시설 14종*
 -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③ 모임·행사

- 조치 내용 :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붙임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④ 고위험사업장

- 대상 시설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6.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⑤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회식·대면회의·출장 자체
- **민간 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 개선 권고**

⑥ 그 외

- **종교시설**
 - 방역지침 의무화
- **교통시설 : 대중교통 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방역지침 의무화
- **국공립시설**
 - 소관 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는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 원칙
 - * 부처·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 이용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스포츠관람**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관중 입장

3.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으니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각 협단체에서는 동 자료(붙임)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메일, SNS 등을 통하여 신속히 소속 기업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관련 공식 포스터 및 리플렛을 제작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니 기관 내 및 소속·유관기관에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의 상업적 이용(상품화, 판매행위 등)을 절대 금합니다.

※ 본 시안(소스 포함)의 타 콘텐츠 개발 용도 사용을 절대 금하며, 보건복지부 로고 및 시안 수정·내용 삭제, 픽토그램(그림)의 변형 및 2차 활용을 절대 금합니다.

- 붙임 1.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8. [포스터 및 리플렛]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_보건복지부 (대용량 첨부). 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신자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업종별 협·단체

주무관 **박혜수** 과장 전결 2020.11.23.
니성화

협조자

시행 산업일자리혁신과-1385 (2020. 11. 23.) 접수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 <http://www.motie.go.kr>

전화번호 044-203-4222 팩스번호 044-203-4722 / oyeah5@motie.go.kr / 대국민 공개